

건설중재 통계 현황 및 분석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1. 건설중재사건의 연도별 접수 및 증가율 현황

1)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중재사건	175	4,502	197	3,155	210	3,106	211	2,662	185	2,235	213	1,290
건설 중재사건	45	3,544	57	1,821	66	1,394	71	675	61	1,098	54	702
건설사건 비중	25.7	78.7	28.9	57.7	31.4	33.9	33.6	25.4	33.0	49.1	25.4	54.4

2) 연도별 증가율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중재사건	175	16.7	197	12.6	210	6.6	211	0.5	185	△12.3	213	15.1
건설 중재사건	45	45.2	57	26.7	66	15.8	71	7.6	61	△14.1	54	△11.5

건설중재 건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4년부터 다소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변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은 IMF사태 이후 건설중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

근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2003년도 선택적 중재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분쟁당사자들에게 건설중재의 효용성이 점차 알려져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측된다.

2. 공공·민간건설 중재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수,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공 건설사건	30 (66.7)	3,451 (97.4)	45 (78.9)	1,797 (98.7)	340 (51.5)	1,266 (90.8)	33 (46.5)	497 (73.6)	32 (52.5)	974 (88.7)	30 (55.6)	596 (84.9)
민간 건설사건	15 (33.3)	93 (2.6)	12 (21.1)	24 (1.3)	32 (48.5)	128 (9.2)	38 (53.5)	178 (26.4)	29 (47.5)	124 (11.3)	24 (44.4)	106 (15.1)
계	45 (100)	3,544 (100)	57 (100)	1,821 (100)	66 (100)	1,394 (100)	71 (100)	675 (100)	61 (100)	1,098 (100)	54 (100)	702 (100)

* ()안은 구성비임

건설중재사건을 공공건설 중재사건과 민간건설 중재사건으로 분류하여 보면, 그동안 공공건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재제도 이용이 민간건설계약의 분쟁해결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지하철건설공사, 인천 국제공항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등 대형 공공건설 계약과 관련된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비중이 매우 커 2001년에는 전체 건설중재사건 중 공공건설 중재사건이 78.9%에 이르고 분쟁금액도 98.7%로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을 정점으로 전체 건설중재사건 중 공공건

설 중재사건의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2년에는 51.5%를 차지하고 2003년에는 46.5%로, 현재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비중이 공공건설 중재사건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재를 이용한 건설분쟁 해결의 유용성이 건설업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 대형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과 함께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중재합의 부존재 논란과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이 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3. 건설중재사건의 분쟁금액 규모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억원 이하	-	6	6	9	9	14	10	17	8	10	9	15
1억초과~5억 이하	4	5	13	1	5	14	8	11	13	10	7	6
5억 초과~10억 이하	1	3	2	2	6	3	6	3	4	6	4	1
10억 초과~50억 이하	10	-	14	-	5	-	5	7	5	3	7	2
50억 초과~100억 이하	8	1	5	-	6	1	3	-	1	-	2	-
100억 초과~200억 이하	5	-	3	-	1	-	1	-	1	-	1	-
200억거 초과~500억 이하	-	-	2	-	2	-	-	-	-	-	-	-
500억원 초과	2	-	-	-	-	-	-	-	-	-	-	-
계	30	15	45	12	34	32	33	38	32	29	30	24

* ()안은 구성비임

건설중재사건의 분쟁금액은 대부분 고액사건으로서 이런 경향은 공공건설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분쟁금액 규모별로는 공공건설사건에서 50억원 초과와 대형규모의 사건들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위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간건설사건의 경우는 50억원 초과의 대형규모의 사건들이 최근 5년반 동안 2건에 불과하며, 1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아 민간건설의 분쟁은 대부

분 하도급 등의 영세한 규모의 사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간건설사건은 1억원 이하의 경우가 전체 민간건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 바, 이들 사건은 지난 2004년 2월 21일 접수분부터 신속절차가 적용되어 분쟁당사자들은 보다 신속, 저렴한 분쟁의 해결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구간의 사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4. 건설중재사건의 청구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추가공사비	22	8	26	4	24	12	21	10	19	7	18	4
공사·용역(잔)대금	3	5	3	5	2	10	5	16	6	12	5	14
감액공사비 반환	1	-	10	-	5	-	-	-	-	-	-	-
지체상금 반환	-	-	4	-	2	-	5	-	4	1	6	-
손해배상	2	1	2	2	1	3	2	10	2	3	-	3
채무부존재 확인 (하자보수, 이행보증)	2	-	-	-	-	3	-	1	1	4	-	1
착수금, 보증금 반환	-	-	-	-	1	2	-	-	-	-	-	1
기타	-	1	-	-	-	2	-	1	-	2	1	1
계	30	15	45	12	34	32	33	38	32	29	30	24

건설중재사건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추가공사비와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평균 63.7%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감액공사비 반환청구와 공사·용역대금 청구 사건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 중재사건에서는 전체사건의 41.3%가 공사·용

역대금을 청구하고 뒤이어 28.7%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공공건설사건 보다 민간건설 중재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하자, 공사지연, 시설불량,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5. 건설중재사건의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공공	21(2)	70.0	43(2)	95.6	29(2)	85.3	29(1)	87.9	27(1)	84.4	18	60.0
건설	9	30.0	2	4.4	5	14.7	4	12.1	5	15.6	3	10.0
사건	-	-	-	-	-	-	-	-	-	-	9	30.0
소계	30	100.0	45	100.0	34	100.0	33	100.0	32	100.0	30	100.0

(단위 :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민간 건설 사건	판정	11(3)	73.3	10(1)	83.3	26(6)	81.3	30(4)	86.2		86.2	19(6)	79.2
	철회	4	26.7	2	16.7	6	18.7	8	13.8	25(4)	13.8	5	20.8
	진행	-	-	-	-	-	-	-	-	-	-	-	-
	소계	15	100.0	12	100.0	32	100.0	38	100.0	29	100.0	24	100.0
계	판정	32(5)	71.1	53(3)	93.0	55(8)	83.3	59(5)	85.3	52(5)	85.3	37(6)	68.5
	철회	13	28.9	4	7.0	11	16.7	12	14.7	9	14.7	8	14.8
	진행	-	-	-	-	-	-	-	-	-	-	9	16.7
	소계	45	100.0	57	100.0	66	100.0	71	100.0	61	100.0	54	100.0

* ()은 화해판정사건임

최근 6년간의 건설중재사건 354건(공공건설사건 204건, 민간건설사건 150건)은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9건을 제외한 345건이 처리되었는데 전체 건설사건의 81.4%인 288건이 판정으로 처리되었고 16.1%에 해당하는 57건이 중재절차 중에 철회되었다.

판정처리된 288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31건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의 화해로 처리되었는 바, 그 대부분이 민간건설사건으로 나타났다. 즉 판정처리된 민간

건설사건 116건 중 19.8%인 23건이 화해판정으로 처리되어 공공건설사건의 4.9%에 비하여 화해로 처리된 사건의 비중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민간업체 간의 사건이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분쟁금액도 적어 공공사건보다 화해로 처리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6. 건설중재사건의 중재판정율(승소율)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각하, 기각	4	2	9	2	8	6	5	7	3	5	2	5	31(18.5)	27(22.5)
1~10% 승소	3	-	4	1	1	3	2	2	1	-	-	-	11(6.5)	6(5.0)
11~20 "	2	-	3	-	2	-	2	5	4	2	-	1	13(7.8)	8(6.7)
21~30 "	3	-	2	3	2	2	5	3	3	2	2	-	15(9.0)	9(7.5)
31~40 "	3	4	6	1	2	4	2	2	4	1	1	2	18(10.8)	14(11.7)
41~50 "	2	2	1	1	5	4	4	3	2	1	6	2	20(12.0)	13(10.8)
51~60 "	-	1	2	-	1	1	4	3	2	1	1	1	10(6.0)	7(5.8)
61~70 "	1	-	5	-	2	4	2	2	-	3	2	1	12(7.2)	10(8.3)
71~80 "	-	1	3	1	1	-	1	2	3	1	1	2	9(5.4)	7(5.8)
81~90 "	-	1	1	-	-	-	1	1	1	4	1	-	4(2.4)	6(5.0)
91~99 "	-	-	2	-	1	2	1	-	-	1	-	2	4(2.4)	5(4.2)
100 "	3	-	5	1	4	-	1	-	4	4	3	3	20(12.0)	8(6.7)
계	21	11	43	10	29	25	29	30	27	25	18	19	167(100)	120(100)

*1. ()안은 구성비임 2. 2002년 민간건설사건 중 신청금액 없는 승소율을 정하기 곤란한 사건 1건은 제외함
3. 판정(승소)율은 신청금액 대비 판정금액의 비율로 판정금액/신청금액 × 100%로 구함

건설중재사건의 판정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각하나 기간 판정되어 신청인이 완전 패소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의 경우 18.5%, 민간건설사건의 경우 22.5%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50% 이상의 판정율로 판정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이 35.3%, 민간건설사건이 35.8%로 나타났다. 이로써 공공사건과 민간사건의 판정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재신청이 완전 승소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이 12.0%, 민간건설사건이 6.7%로 공공건설사건의 판정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특이한 점은 지난 2년간 50% 이상의 판정율을 보인 비율이 공공사건에서 45.5%, 44.4%, 민간사건에서 60%, 47.4%로 각각 나타나 최근 판정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설중재판정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짜 통화상품권 주의

초근 인터넷폰 가입시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갤럭시 정장 구매 선착순 〇〇〇명에게 통화 상품권을, 엠피3 구매시 2만원 통화상품권을 준다는 무료 통화상품권을 준다는 무료 통화상품권이 넘쳐나고 있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장터 판매자와 동네 피자집·통닭집 같은 자영업자들도 판촉을 위해 무료상품권을 얹어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통화상품권은 알고 쓰면 유용하다. 하지만, 모르고 접하면 사기 마케팅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 통화상품권의 가치

통화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상품권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화상품 발행업체들은 액면가 1만원짜리 통화상품권을 1000~2000원 전도에 파는데, 군소업체는 1000~12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발행된다고 해서 모두 다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다. 특히 액면가 1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는 대개 10초에 18원의 요금을 적용하지만, 통화상품권은 대개 10초당 30~40원 꼴로 갑절이 비싼 1분당 200원 안팎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휴대전화 요금 1만원은 1시간 30분가량의 통화가 가능하지만, 통화상품권 1만원은 50분 정도의 통화만 제공하며, 분당 과금제라서 1분초를 쓰더라도 2분의 요금이 부과되는 단점도 있다.

무료 통화상품권 유통 실태

통화상품권 발행업체들은 통신사의 음성통화를 재판매하는 병정통신사업자로, 예전에 개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선불요금카드를 판매하다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판촉용 통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단계로 진화했

다. 지금은 30여대 업체가 2천원짜리 소액권부터 10만원짜리 고액권까지 매달 100~200만장을 발행한다. 콜제로, 이지콜링 등이 비교적 발행 규모가 큰 업체인데, 자체 서버를 보유하거나 임대해 접속번호(080)를 통해 통화량을 관리한다.



이런 통화상품권 주의해야 한다

통화상품권은 사은품으로 여겨지지만 액면가와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흔히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기기값 대신 통화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물건값이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통화상품권을 할인 금액만큼 주겠다고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업체들은 군소 업체에서 싸게 구입한 통화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한 발행업체가 부도나면 막상 통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군소 업체는 서버용량의 부족 등으로 물리는 시간대에 통화량이 물리는 시간대에 통화가 끊기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저세공과금 명목 등으로 1만원에 1천원가량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상품권들은 사실상 1500원 가량에 구매한 통화상품권 구입비 대부분을 고객에게 떠넘긴 사기다. 통화상품권은 개인 판매용이 아니라 업체 사은품으로만 유통되는 게 정상적인 거래이며, 사은품으로만 생각한다면 통신요금 절약에 유용할 수 있다.